

#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중진 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2024. 7. .

도시교통위원회전 문 위원

##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중진 조례안

## 1. 제안경과

○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### 2. 제안이유

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·운영하고,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다. 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와 대중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5조~제6조)
- 라.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~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대중교통과

라. 입법예고 : 2024. 5. 30. ~ 2024. 6. 19. (20일간)

마.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,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.
-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에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원사항 외에 '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' 등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,
  - 안 제8조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교통카드 사용 시민과 대중교통운영자의 운송 손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그동안 자체 조례없이 상위법령에 따라 지원해왔던 광역 알뜰교통카드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 등 자체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 붙임1

## 관계법령

### ☑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#### **제2조**(정의)

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[개정 2008.2.29 제8852호(정부조직법), 2013.3.23 제11690호(정부조직법), 2014.1.7 제12216호(도시철도법), 2015.12.29, 2020.4.7, 2020.6.9 제17453호(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일부개정을 위한 법률), 2021.1.5]
- 1. "대중교통"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.
- 2. "대중교통수단"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.
- 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(이하 "노선버스"라 한다)
- 나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
- 다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 차량
- 라. 「해운법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(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)
- 마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
- 바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
- 3. "대중교통시설"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- 가. 버스터미널·정류소·차고지·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
- 나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
- 다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
- 라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(이하 "환승시설"이라 한다)
- 마. 여객터미널, 선착장, 도선장,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
- 바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
- 4. "대중교통운영자"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·관리하는

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- 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도시철도법」, 「해운법」,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·허가·인가· 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·신고 등을 한 자
- 나.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·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
- 5. "간선급행버스체계"라 함은 버스전용차로, 편리한 환승시설,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.
- 6. "교통카드"란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·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.
- 7. "교통카드데이터"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전산자료 중 이용자의 통행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로서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.

#### **제3조**(국가 등의 책무)

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[개정 2020.6.9 제17453호(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)]

- 1.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·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
- 2.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
- 3.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
- 4.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
- 5.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 비스의 강화
- 6. 오지·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
- 7.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- 8.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, 국민이 편리하고

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제12조(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)

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</u>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 [개정 2008.3.28, 2020.6.9 제17453호(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), 2020.10.20, 2022.11.15, 2024.1.9, 2024.1.30] [[시행일 2024.7.10]]

- 1.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
- 2. 저상(底床)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(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·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)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·다양화
- 3.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·개선
- 4.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·운용
- 5.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

# 비용추계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  -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제정안 제7조, 제8조
- 나. 비용 발생 요인
  -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및 서비스 향상(안 제7조 제1호)
  -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정착(안 제7조 제2호)
  -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(안 제8조 제1호)
  -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(안 제8조 제2호)

## 2. 비용 추계결과

## 가. 추계의 전제

-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및 서비스 향상(안 제7조 제1호),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정착(안 제7조 제2호)
  - 아직 구체적인 기본 수립 이전으로 향후 추진방향 설정에 따라 비용 추계할 수 있는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
-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(안 제8조 제1항)
  - 조례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

-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(안 제8조 제2항)
  - 기후동행카드사업
  - :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금번 제정으로 수반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음
  - ☞ 대상인원 : 5,113명(23. 11월 기준)
    - 남양주 ↔ 서울 전철 일 평균 이용객 수의 10% 인원

남양주 노선	월 서울 진출 횟수	월 서울 외 지 역 진출 횟수	일 평균 이용객 수(명)	기후동행카드 참여예상인원(명) (10% 참여 가정)	지자체 손실분담 (천원)
진접선	409,740	48,884	15,287	1,529	226,544
중앙선	436,561	84,203	17,359	1,736	260,072
 경춘선	365,799	188,744	18,485	1,848	288,290
총계	1,212,100	321,831	51,131	5,113	779,064

- ※ 서울↔남양주 간 통행, 남양주 내부통행, 남양주↔기동카 참여 경기 시군 통행 포함
  - ▶ 지자체 연 손실분담 산출근거[서울특별시 방침 제123호(2023.09.27.)]
    - → { (월 서울 진출 횟수) × 40% + (월 타지역 진출 횟수) × 50% } ÷ 30일 × 3만원 × 12개월 × 0.1 (10% 기후동행카드 참여인원)

### 나. 추계결과

○ 기후동행카드사업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
총 소요액	779	934	1,121	1,346	1,615
기후동행카드 지원 사업	779	934	1,121	1,346	1,615

※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증가 추정(매년 20% 증가)

다. 재원조달방안: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## 3. 기타사항

## 가. 현재 추진중 사업

○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(안 제8조 제1호)

사업명	사업내용	법적근거	예산액(2024년)
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	만6세~만19세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경기지역화폐로 연 최 대 24만원 지원	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제15조 제1항	3,310,416천원 (도비70%, 시비30%)
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	월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대중교통 비를 환급	대중교통법 제12조	1,106,000천원 (국비 50%, 도비15%, 시비35%)
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	만65세 이상 버스이용자들에게 분기 최대 3만원 지원	대중교통법 제3조,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	3,620,000천원 (시비100%)
K-패스 사업	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60회에 한하여 정률할인하여 이용자들에게 환급	대중교통법 제12조	2,802,000천원 (국비 50%, 도비15%, 시비35%)
THE경기패스	K-패스 사업에 대해 청년의 범위를 만34세에서 만39세까지확대하고 61회 이상 사용분에한해 무제한 지급	대중교통법 제12조	121,271천원 (도비30%, 시비70%)

○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(안 제8조 제2호)

사업명	사업내용	법적근거	예산액(2024년)	
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	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 과 학생들의 교통편의 제공	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오지·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	1,383,000천원 (도비30%, 시비70%)	
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	수도권 통합용금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 중 일부를 지원하 여 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업 체 경영개선	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제15조	1,106,000천원 (국비 50%, 도비15%, 시비35%)	
저상버스 운영비 지원	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 등 교 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 해 일반버스 대비 운송원가가 높은 저상버스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여 주민 교통편의 증진	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,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	115,000천원 (도비30%, 시비70%)	
저상버스 도입비 지원	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 등 교 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 해 일반버스 대비 운송원가가 높은 저상버스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여 주민 교통편의 증진	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,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	4,948,000천원 (국비50%, 도비7.5%, 시비42.5%)	

사업명	사업내용	법적근거	예산액(2024년)	
벽지노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	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운행 중인 벽지노선 공 영버스 운행결손금을 지원하여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주민 교 통 편의 증진	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제15조	960,000천원 (시비100%)	
마을버스 재정지원	마을버스 운수업체 경영상태 개선 및 주민 교통편의 증진	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	1,300,000천원 (시비100%)	
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	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에 따른 손실금 중 일부를 지원하 여 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업 체 경영개선	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제15조	145,335천원 (도비30%, 시비70%)	
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	경기도 공공버스(광역버스 노 선입찰형 준공영제) 사업 시행 으로 시민 광역교통 이용 편의 제공	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	11,771,608천원 (도비30%, 시비70%)	
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	출퇴근 시간대 만차로 승차에 불편을 겪는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등 투입하여 교통편 의 증진	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	513,760천원 (국비30%, 도비21%, 시비49%)	

# 4. 작성자 : 교통국 대중교통과장 문명우

## 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: 천원)

	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계
À	레 입						
),	를 출						
기후동형	뱅카드 지원사업	779,000	934,000	1,121,000	1,346,000	1,615,000	5,795,000
	Δ						
	$\triangle$						
재원 조달							
	소 계						
의존	보조금						
재원	지방교부세						
	소 계	779,000	934,000	1,121,000	1,346,000	1,615,000	5,795,000
자체	지방세	779,000	934,000	1,121,000	1,346,000	1,615,000	5,795,000
수입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